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

2021. 02.

안전관리등급심사단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목 차

I. 심사 목적 및 개요	1
II. 심사 대상 및 등급결정	4
III. 심사 기준 및 내용	8
Ⓐ 안전역량	13
Ⓑ 안전수준	24
2-① 작업장 분야	25
2-② 건설현장 분야	30
2-②-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31
2-②-나. 건설기술진흥 분야	37
2-③ 시설물 분야	64
2-④ 연구시설 분야	73
ⓒ 안전성과 및 가치	81

I . 심사 목적 및 개요

1 심사 목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

2 심사 개요

가. 심사 근거

< 심사근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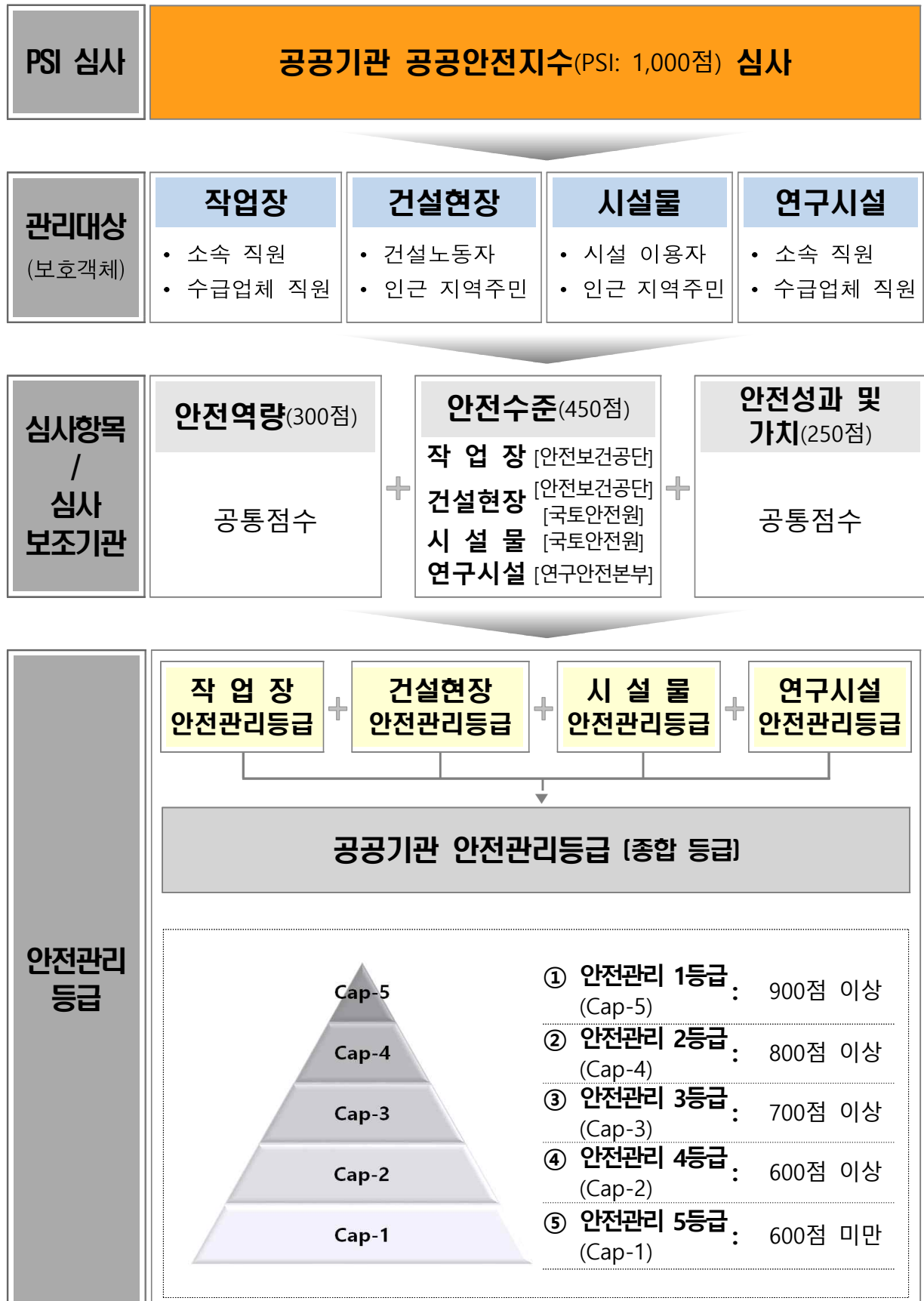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기획재정부)
-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나. 심사 주체

- (주 관) 기획재정부
-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심사 전문성을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 수행 및 심사단 업무 보조

3 심사 체계도



Ⅱ. 심사 대상기관 및 등급결정

1 대상기관 선전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

2 2021년 대상기관: 98개 기관

기관분류	Yellow 그룹(65개)	Red 그룹(33개)
공기업 (31)	주식회사 에스알, 광물자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조폐공사, 한전KPS, 마사회
준정부기 관 (28)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도로교통공단,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승강기안전공단,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기타공공 기관 (39)	코레일유통(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원, 기계연구원, 기술교육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노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 심사유형별 분류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98개)
심사 Ⅰ형 (73)	작업장 (29)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유통(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건설현장(1)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7)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심사 Ⅱ형 (8)	연구시설 (36)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작업장 +건설(1)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 (6)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심사 Ⅲ형 (17)	건설현장 +연구(1)	국방과학연구소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17)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안전관리등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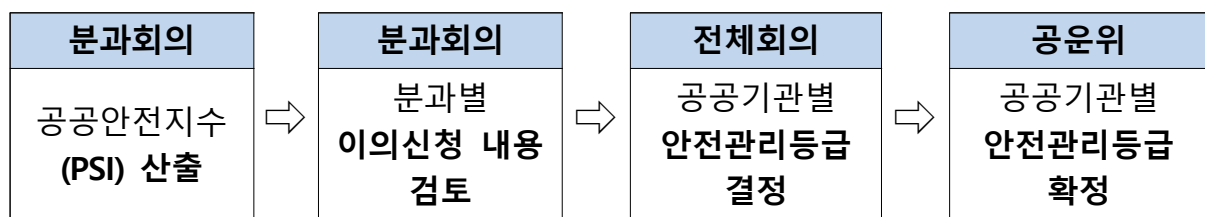
□ 안전관리등급 종류 및 체계

-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에 대한 개별 안전관리등급
- (종합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의 모든 위험요소의 공공안전지수(PSI)를 취합하여 산출한 종합 안전관리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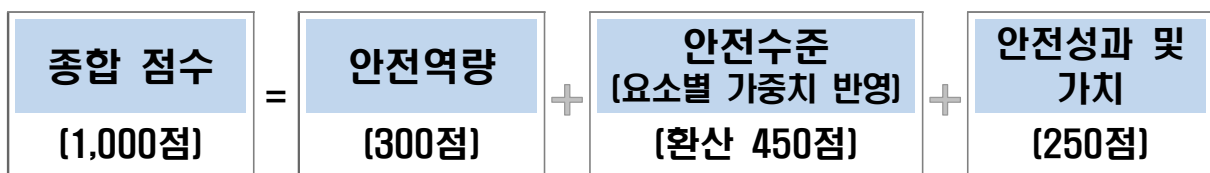
< 안전관리등급 결정 체계도 >



□ 안전관리등급 결정 절차



□ 안전관리등급 결정



III. 심사 기준 및 내용

1 심사 기준

가. 심사항목 구성

□ 공공안전지수(PSI, Public Safety Index)의 구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공공안전지수 산출

< 심사범주별 주요 심사내용 >

심사범주	주요 심사내용	
안전역량 [공통기준]	·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 및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체계역량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안전수준 [개별기준]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	
	작업장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 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 확보 노력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 및 보건 유지·관리 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공통기준]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와 가치(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사고사망 감소 성과 등	

☐ 범주별 심사기준 적용

- (안전 역량, 성과 및 가치) 모든 기관에 공통 심사기준 적용
- (안전수준) 위험요소별로 개별화된 심사기준 적용

나. 심사배점 및 가중치

☐ 심사범주 배점

- 위험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반영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안전수준에 가장 높은 가중치 부여

< 심사범주별 배점 >

공공안전지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1,000점	300점	450점	250점

☐ 안전수준 가중치

-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 수량과 조합에 따른 위험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차등 가중치 적용
-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위험요소	위험1(중점분야)	위험2	위험3	위험4
1유형	100%			
2유형	60%	40%		
3유형	45%	30%	25%	
4유형	40%	25%	20%	15%

2 심사 내용

※ 심사항목 및 배점은 주관 부서 및 심사단 검토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항목 총괄표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가중치
총 점			1,000
①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합계		300
	1. 체계역량 [170점]	소 계	170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30
	2. 관리역량 [130점]	소 계	13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40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② 안전수준 [450점]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1. 작업장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450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2. 건설현장	【건설발주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450
		①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②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③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60
		④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90
		⑤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120
		⑥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60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가중치
		【건설발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70
		②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140
		③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110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30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50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60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4.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450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30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 안전성과 및 가치 [250점]	공통	안전성과 및 가치 합계	250
		①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3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100
		②-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이력관리(22년 적용)	(30)
		③ 안전문화 확산	20
		④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 성과	100

안 전 역 량

① 안전역량 체계역량 [①-1]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원·하청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의지, 관심도, 현장활동 참여, 향후 안전보건 수준 향상 계획 등의 적정성 (면담 등 실시)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 사업특성과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과 구성원에 대한 공유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③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재·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0조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4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1/2)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과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를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 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회,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위상 확보 노력 - 직제 상 안전관리조직*과 업무분장 등에서의 구성과 권한 부여 적정성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기획, 실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부서, 구성인원) - [안전관리 중점기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②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역량(적정 자격자, 전문성 등) 및 제고노력 (외부교육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다음페이지에 계속)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2/2) [배점: 40점]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③ 안전경영위원회(본사)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안전경영위원회(본사만 해당)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지침·계획 및 결과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안전관리 중점기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4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배점: 30점]☐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❶ 안전 소요예산 합리적인 편성 노력, ❷ 안전보건 예산 편성(위험 시설 정비, 안전사업비, 교육·훈련, 신제품·기술 개발·구매 등)과 내역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 투자) ② 안전보건 예산 집행 - 안전보건 편성예산 집행·관리의 수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① 안전역량 체계역량 [①-1]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의 작성, 내용구성, 관리체계, 최신화 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기관은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안전관리규정과 항목별 하위 절차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안전관련 법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 ❶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 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등 반영 수준, -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준수, 현행법 내용의 반영한 최신화 수준, 제·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②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작업장 위험·작업 특성을 반영한 지침(기준, 수칙, 가이드 등)의 제정 수준과 관리체계, 최신화 수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과 안전기본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기본계획(안전경영책임계획)을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별로 실효성과 내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전략 설정을 위한 노력과 과정의 적정성 ② 안전기본계획 구성내용 및 이행수준 - 실행과제 발굴 노력, 실행 부서 지정 등을 통한 실행력 담보, 근로자 참여 수준, 이행상황 점검, 환류 등의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위험성평가 활동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행점검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직영·도급·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평가 주체, 평가팀 자격 및 구성, 평가 기법, 평가 절차, 관련자 교육,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평가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 ❶지침·실행계획 수립 적정성, ❷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확보 등 적정성 ②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 ❶위험성평가 사전준비·실행·개선대책 수립·개선 수준, ❷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의 적정성 ③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위험예지훈련, 안전작업허가, 안전점검 등)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배점: 30점]**☐ 지표개요

지표정의	•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된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COVID-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회적 약자(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힘써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수준 - ❶ 건강진단 종류에 따른 대상자 파악, 실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실행 수준, ❷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의 파악 및 관리 수준 ②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수립,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등 - ❶ 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의 파악 및 실시, 측정결과의 공유 ❷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50%이상(소음은 노출 기준 초과) 발생 공정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③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 COVID-19, 독감, 동·식물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수준 ④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 ❶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지원의 적정성, ❷ 근로자 건강 증진활동(직무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개선 등)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③ 안전보건교육 · 안전의식 · 활동참여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보건 교육활동과 인식제고, 근로자 참여활동 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업무 특성·직무·시기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③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 강사의 전문성, 교육 참석 제고, 불참자에 대한 추가 교육 등 과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④ 관리자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확인 - (관리자)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해당공정의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등) - (근로자)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및 착용 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⑤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 운영 -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 보건 신고·제안제도의 지침(계획)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4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비상 상황 및 재해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와 이행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재해 원인조사 및 아차사고 발굴을 위한 매뉴얼·절차서 등 지침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고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소속 직원 교육 및 훈련,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사고기록 및 보존) ②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③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개선 노력 -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기록 유지관리, 개선 노력의 적정성 ④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의 구성과 내용의 적정성 ⑤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⑥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적정성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안 전 수 준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작업장·건축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의 적정성 ③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 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9조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작업장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㉔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1/2)** [배점: 150점]☐ 지표개요

지표정의	• 기관 자체 보유 또는 외부 반입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및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방지 조치, 추락·낙하·붕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 적격품의 선정과 안전조치 및 관리상태 수준 -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실시, 검사필증 부착상태 등의 적정 유지·관리 수준 -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조치 (Lock-Out Tag-Out; 안전잠금장치-안전꼬리표), 감시인 배치(필요시) 등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②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 송·수전설비(변전실·변압기·배전반 등), 고정·이동식 전기기계·기구·설비, 배선 등으로 인한 감전·전격 재해 등의 위험방지 조치 - 작업자 자격의 적정성, 전원 차단·투입 관리, 이격거리 준수, 작업공간 확보, 적정 작업 기구·장치·보호구 확보 및 사용 등의 안전작업 기준·절차의 준수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

㉔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2/2) [배점: 150점]

☐ 세부 심사내용(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㉔ 추락 및 낙하 등 위험 방지조치 - 건축물 등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적정성 -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의 내·외력에 의한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자체점검 및 조치의 적정성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작업장 심사대상 기관 / 15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배점: 9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중독·질식 위험 방지 활동의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과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 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작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적용 여부 검토 및 구분도 작성, 폭발위험장소 방폭기계기구 선정·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②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조치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관리 및 사용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주변시설(바닥 등),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주지 및 보호조치 등 적정성 평가 - 질식 위험공간(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위치 파악 및 관리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상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예방장비·시설 등의 운용 적정성 평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작업장 심사대상 기관 / 9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기관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고위험 작업을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위험성 검토, 작업 승인 및 감독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화기취급, 정전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허가 및 승인권자의 안전조치 승인여부, 현장 입회 및 확인 여부 등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의 적정성 ②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작업시작 전 점검,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지휘, 감시인 배치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개선·실행내용의 적정성 ③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작업중지 요청제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작업장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작업장 [㉔-1]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인프라 지원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및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평가 기준방법 등 - ①도급의 이해 및 안전관리대상 수급업체 범위설정, 수급업체 작업현황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계획단계에서 도급작업의 위험성 검토 및 제공,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법 제61조)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과 선정절차 등 ②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실행 - (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 점검 등 계획·실행,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 (법 제58조~제60조)도급 금지·승인, 하도급 금지, (법 제66조①)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수준 ③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④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⑤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필요조치의 이행 확인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작업장 심사대상 기관 / 10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①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공사 계획단계에서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발굴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안전보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또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구성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변경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수준 ① 발주자의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 발굴 수준(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 자문, 유사 또는 동종 건설공사의 사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문서 검토 등)과 ②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조건 도출수준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이력 등 관리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㉔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검토 및 설계 반영 수준과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교육·전문가참여·적정성검토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주요 내용을 전달 및 공유하여야 하며, 구성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변경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 - 발주자로서 설계자가 실행하는 위험성평가의 지원, 공중별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지원·검토 및 그 결과를 실시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및 반영수준 ②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 ❶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제공 및 주요내용 공유 수준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❷ 공사금액, 공사기간 산출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이력 등 관리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㉔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조치 [배점: 60점]

□ 지표정의

지표정의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검토·확인 수준과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시공자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 등을 수립하여 지원·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공사변경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 - 발주자로서 시공자가 실행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발주자 확인기준 및 후속 처리 등) ②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 ①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제공 및 주요내용 공유 수준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 구성 내용의 적정성과 변경 이력 등 관리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④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배점: 90점]

□ 지표정의

지표정의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계획, 활동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며,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법정 및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안전보건조정자가 활동한 업무 내용의 적정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 체계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선임 또는 지정시기, 도급업체 통보, 업무 및 활동 계획(공사도급인과 작업내용 공유, 확인 계획)과 조정자 업무 수행 지원 체계 ②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 혼재된 위험작업에 대한 조정 활동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관리수준 • 위험작업 파악활동 사항 • 위험작업 내용·시기 • 위험도 파악, 조정·조치사항 등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9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⑤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배점: 120점]

□ 지표정의

지표정의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체계 및 자체 역량강화수준과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발주자의 이행점검 및 조치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발주자는 발주(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업무체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 - 발주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기준(지침) 등 업무 수행 체계와 공사감독자 산재예방 역량강화 노력(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 등) ②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현장 안전조치에 대한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 - ①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업무 체계 ②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감소대책 이행에 대한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수준 ③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의 수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결과(현장점검 및 “사망사고 예방 특별기획점검(Patrol)” 결과 등)를 참조 <현장점검 시 주요 착안사항> • 추락, 낙하, 붕괴·도괴, 화재·폭발·누출, 끼임, 감전, 질식 등 건설현장 주요 유해위험요인 • 개인보호구 및 위생시설 관리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2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산업안전분야 (㉔-2-1)

㉔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배점: 60점]

□ 지표정의

지표정의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발주자 관리 등에 대한 노력과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등을 요청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계상하고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주지하여야 하며, 대상금액의 변경 등을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 -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자체 처리기준, 해당기준에 대한 시공자와 공유 노력 및 이행 실적 등 관리 수준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에 대한 사전주지 (공사 입찰 시 등), 금액 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 수준 ② 금액 조정 방법 및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수 등 관리 수준과 ③ 적용된 건설공사 종류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성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1/3)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기관의 건설안전 관리규정 제정 및 활용실적에 대해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발주 및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유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제정(10) - 사규(기관규정)로써, 건설현장의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여부(정관, 규정, 규칙, 지침 조례 등) ※ 한시적인 내부결재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②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의 활용 실적(10)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현장 활용여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심사방법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기관의 규정(집) 전체에 해당하는 목차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규정 전문 제출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적용한 실적 ※ 현장활용 실적은 심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적으로 한정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2/3)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안전 관련 규정 내 책임·역할 규정여부를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임해야하므로, 건설안전 규정 및 매뉴얼 등에 구성원의 책임·역할을 정의하고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10) - 건설안전 규정 및 매뉴얼 등에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역할·책임사항 등의 규정여부 확인 ※ 건설안전에 관련된 내용 포함여부를 심사 ※ 구성원은 기관장, 본부장(임원), 실장, 팀장, 팀원 등 건설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인원 ②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역할 및 책임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10) - 건설안전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업무 이행실적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심사방법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구성원의 건설안전 책임사항이 명시된 규정/매뉴얼과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결과보고서, 업무실적보고 등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3/3) - ①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안전 전담부서 운영, 위상 및 권한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의 건설안전업무 및 건설현장의 시공사·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안전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업무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안전 전담부서 없이 겸업으로 운영(10) - 건설안전 전담부서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의 안전업무 수행여부 ※ 업무분장 및 조직운영규정 등에 '(건설)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부서와 동등하게 운영(10) - 건설안전 전담부서의 근거가 직제규정 등(부서운영규정 등)에 일반부서와 동등한 구성여부를 심사 - 건설안전에 관한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자(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분점수 부여(5점) ※ 건설안전 전담부서 : 건설안전분야 만을 전담하는 본사 내 별도조직 ※ 건설안전 전담자 : 건설안전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본사소속 직원 ※ 건설안전을 위한 T/F 등의 한시적 조직은 구성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 인정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① 건설안전체계 구축 수준 (3/3) - ② [배점: 30점]

□ 세부 심사내용(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③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부서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운영(10) - 건설안전 전담부서의 근거가 직제규정(부서운영규정 등)에 일반 타부서 대비 상위부서로 구성(부서장이 타 부서 대비 상위직급 배치)되어 있는 경우 ※ 부서장이 겸직일 경우 불인정 ※ 건설안전 전담부서가 없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항목 불인정 ※ 건설안전분야 : 건설안전업무를 기본으로 포함, 재난관리, 품질, 하도급관리 업무까지만을 범위로 한정(이외 타 업무포함 수행 시 겸업으로 간주)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3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건설안전업무 수행이 명시된 조직운영규정 등 - 건설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업무분장표) 등 - 전담부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제규정(조직도 포함) 등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1/9) - ① [배점: 2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발주 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이행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은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기간만 명시(5) - 계약서 등 산출근거 없이 단순 공사일(착공·준공예정일)만 표기된 경우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기간에 계약적인 사항(공사불가능 일수 등)이 반영(10) - 내부규정 없이 공사기간 산정(공사중지 기간 등)한 내역을 심사(공종별 공사기간이 단순하게 산정된 여부)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③ 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기간이 자체 지침/규정(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종류 및 규모, 기타사항 등) 등에 의해 반영(10) -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규정 수립한 경우(5) - 수립된 지침/규정에 따라 공사일수 산정(10)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1/9) - ㉔ [배점: 25점]

□ 세부 심사내용(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 지침/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식자료(해당규정이 명시된 내용필수) 확인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에 의해 산정된 경우, 해당근거 명시여부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표지, 목차 등이 포함된 공식적인 공사기간 산정자료 및 공사기간 관련 규정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2/9)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발주 시 적정한 건설안전 관리비용 계상 이행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1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별도계상 여부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계상되었으며, 낙찰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상(10) -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낙찰률에 적용받지 않고, 예정 금액 100% 계상 여부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안전관리비 계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내역서 및 낙찰률 미적용(100% 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3/9) [배점: 1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법적기준 외 건설안전 전담인력(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비용지원체계 운영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인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사고발생 확률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외, 안전분야 담당자 배치비용의 추가 지원(10) - ‘건설공사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배치 인원 외 추가배치 사항을 확인 ※ 법적 배치기준 내 안전담당 지정(겸임)은 불인정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외, 안전분야 담당자 배치비용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5) -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외 추가배치를 위한 기관내부 지침/규정 수립여부 확인 ※ 일시적, 한시적인 내부방침 등은 불인정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기준에 따른)건설사업관리자기술자 외 건설안전 전담인력 추가배치 비용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실적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4/9) [배점: 1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평가 이행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중심의 시공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기본설계 단계부터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기본설계 단계에서 개략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10) -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보고서 관련 내용)에서 안전성평가 (설계기술심의 내용 중 건설안전분야 내용) 실시 여부 ※ ‘안전성평가’는 설계기술심의 등에서 건설안전분야를 의미 ※ DFS(설계안정성)보고서 검토를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의뢰 등의 수행실적은 해당없음 ※ 설계와 시공의 발주기관이 다른 경우, 해당 근거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기본설계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5) - 기본설계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문서화 된 기관 내 지침/규정 수립여부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록·보관 여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발주기관 자체 실시한 안전성평가 등의 실적자료 - 문서화된 기관 내 지침/규정 - 회의록 및 설계심의보고서 등 관련자료 기록·보관여부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5/9) [배점: 1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은 법적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성평가(DFS)의 이행여부(10) - 설계안전성평가(DFS) 검토보고서 및 검토결과의 제출여부 확인 ※ 설계안전성평가(DFS) 시행(2016.05.19.)이전에 입찰공고 된 경우 결측 (입찰공고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와 관련,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한 공문 등 관련자료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6/9)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사현장, 현장주변의 제반정보 조사 및 제공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사현장 주변은 일반국민의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수이므로, 공공기관은 현장주변의 제반정보의 명확한 파악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공사현장의 제반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10) -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등에 공사현장 정보제공 내용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공사현장의 제반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10) -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등에 공사현장 정보제공이 있으며, 문서화 된 지침/규정 등의 수립여부 확인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공사현장 주변 정보가 포함된 설계보고서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관련 업무가 명시된 내부규정 또는 표준과업지시서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7/9) [배점: 1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 반영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가설구조물의 부적절한 설치는 건설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은 가설구조물의 설계반영을 통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여부(10) - 설계 시 가설구조물 설계여부 확인 ※ 가설구조물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한 ‘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내 가설 공사를 범위로 함 ※ 가설구조물 미적용 설계로 판단될 시 결측(근거자료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서 또는 관련문서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8/9) [배점: 1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신규공종 착수 전 건설안전 시공회의 운영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신규공종 착수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와 내용의 변화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신규공종 착수 전 발주기관 참여의 안전시공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음(10) - 안전시공회의 실시 시 발주기관(감독관)의 참여 여부 확인 ※ 안전시공보고회 : 안전관리계획서 내 해당공종 착수 전, 발주기관(감독관)이 참석하여 사전 위험성검토 및 대책(건설안전 관련)에 대해 실시하는 회의(월간공정회의 시 안전내용 포함 시 해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안전관리 실태 정기회의도 포함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신규공종 착수 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발주청 참여의 안전시공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음 (5) - ‘발주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안전시공회의’ 관련 기관의 지침/규정 수립여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 실시관련 규정 및 실적 자료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지원 수준 (9/9) [배점: 1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기계 반입허가제도 운영에 대해 심사한다.
핵심가치	• 건설기계 사용에 따라 현장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공공기관은 건설기계 반입허가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에 허가를 하고 있음(10) - 현장의 건설기계 반입현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된 문서 및 발주기관의 검토(시공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보고)여부 확인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조'에 등록된(해당법령[별표 1]참고)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 향타 및 향발기, 천공기를 범위로 함 ※ 해당 건설기계 미사용 현장에 대해서는 결측(관련 증빙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건설기계 현장반입 허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③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1/5)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수급자가 수행한 법정 건설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목적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필요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법정 건설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0) - 시공사의 법정 건설안전점검 시행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보고 여부 - 발주기관 자체발주 확인(안전전문기관과의 계약서·점검보고서 등) ※ 법정 건설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자체안전점검은 제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법정 건설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 (10) - 법정 건설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확인·검토 등의 업무절차에 대한 기관 내 지침/규정 수립여부 ※ 관련법에 의한 시행의 경우 ‘법에 의한 시행 근거’가 공식인 문서(내부보고 등)로 확인될 시 인정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법정 건설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사의 발주기관 보고 실적 및 법정 건설안전점검 업무절차 관련 규정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③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2/5) [배점: 2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현장 주변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행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건설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안전한 현장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지시여부(15) - 건설현장 주변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시 실적 확인 ※ 현장 밖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없다 판단되는 경우 결측 (근거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건설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관련 자체 지침/ 규정에 따라 지시여부(10) - 건설현장 주변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절차(기관의 지침/규정) 수립여부 ※ 기관에서 수립한 안전기준 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인정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주변시설 피해방지 및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 관련 점검실적 포함, 건설현장 주변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지시·이행 실적 - 건설현장 주변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절차 관련 기관의 규정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3/5)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안전을 위한 외부전문가/기관의 활용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의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안전 관리 및 안전활동을 검증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기관 활용(10) - 외부전문가 및 기관을 통한 건설안전 활동실적 확인 - 기술활동 실적 또는 안전교육 수행실적 등 ②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기관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활용(10) - 외부전문가 및 기관 활용관련 지침 혹은 규정수립 여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외부전문가 및 기관을 통한 안전활동 실적과 이에 대한 내부 지침 및 규정 ※ 활용실적 인정범위는 심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으로 함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③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4/5)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안전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도 운영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공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은 작업허가제를 통하여 위험공종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10) - 위험공종 작업에 대한 별도 허가여부 확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을 보유한 발주기관의 경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제1항2호’에 따라 결측 ②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10) - 위험공종작업 허가에 대한 기관의 지침/규정(위험작업 내용) 수립 여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위험공종작업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및 허가에 대한 기관의 내부규정 ※ 활용실적 인정범위는 심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으로 함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5/5) - ① [배점: 2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정기적인 시공자의 건설안전책무 평가 및 결과활용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공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건설 안전책무를 평가하고, 자체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공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이 부정기적으로 평가(5) -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에 대해 부정기적인 평가시행 여부 ※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 : 시공자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안전점검 이행여부, 건설사고 발생건수, 안전관련 지시사항 이행 등이 포함된 평가체계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는 해당 없음 ②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이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10) - 기관의 지침/규정(안전활동 평가기준 등)에 따라 시공사 건설 안전책무이행 평가의 정기적 실시여부 ③ 시공자의 정기적인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결과의 보상 여부(10) - 시공자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의 정기적인 수행실적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㉔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수준 (5/5) - ㉔ [배점: 25점]

☐ 세부 심사내용(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25점
제출사항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에 대한 기관의 지침/규정 (안전활동 평가기준 등) 및 평가실적 - 자체적인 포상제도 운영 및 기타 보상제도 등 실적 ※ 최근 2년간 1회/년 이상 정기적인 평가·보상 실시 여부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5)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안전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달성율을 체크하여 달성율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안전 목표 달성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10) - 기관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활동 측정 여부 확인 ※ 건설안전목표 : 기관의 안전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된, 정량화 개량화 된 지표(세부목표) ※ 건설안전 목표 미 수립 혹은 측정절차 미 수립 시 모든 항목 불인정 ② 건설안전 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측정되는가(10) - 건설안전 목표 달성율 측정을 위한 내부절차 수립여부 확인 ③ 건설안전 목표의 달성율이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고 있는가(10) -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 달성율이 계획대비 100%이상 달성여부 확인(100% 포함, 공식문서 확인)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30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기관의 건설안전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 및 관련 안전활동 측정 실적 -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 달성율이 계획 대비 100%이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 최근 2년간 1회/년 이상 정기적인 평가실시 여부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2/5) - ①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그 결과의 피드백과 공유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현장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점검수행 및 조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점검결과의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 없이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수행(10) -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 수행내역 확인(연간 1회 이상 수행실적)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을 심사 ② 수행된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실적을 확인(10) - 발주기관 주관의 개선사항 및 조치여부 확인실적을 확인 ③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조치개선 여부 포함)에 대한 구성원의 공유(10) - 수행된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결과공유 여부를 확인 ④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실적 등을 수행(10) - 자체적으로 수립된 안전기준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 확인에 관한 발주기관 수행실적 확인 - 기관 내 건설안전업무 규정 및 매뉴얼 내 공사감독 안전점검 (시정조치 확인에 대한 내용 포함) 계획 확인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2/5) - ② [배점: 40점]

□ 세부 심사내용(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40점
제출사항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수검기관 및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모두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발주기관(감독관이) 직접 실시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확인 실적(발주기관 주관의 합동점검 포함) - 내용(체크리스트), 주체, 주기,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수립된 안전기준 - 점검결과(조치개선 여부 포함)에 대한 <u>발주기관 주관</u>의 공유실적(사내공람, 온오프라인 게시, 교육, 세미나, 건설현장 게시 등)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3/5) [배점: 1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현장 및 인접시설물의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실시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건설현장은 항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규정에 따른 건설현장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계획수립 여부(5) - 발주기관 본사주체의 건설현장 긴급상황 대응계획 수립여부 확인 ※ 본사주체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함 ※ 건설현장 긴급 상황 대응훈련은 공용시설물에 대한 대응훈련이 아닌, 건설현장 대응훈련을 의미함 ② 규정에 따른 건설현장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실시 여부(10) - 건설현장 긴급 상황 대응계획에 따른 수행 실적 확인 ※ 발주기관 보유 현장 중 1개소 이상의 실적을 확인 ※ 훈련실적자료는 심사일 기준 1년 미만의 실적을 범위로 함 ※ 발주기관 건설현장 안전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른 대응훈련 (건설현장 재난 및 사고) 계획수립 및 시행 시 인정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5점
제출사항	•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기관의 수립한 비상대응 계획 및 계획에 따른 대응훈련(건설 현장 재난 및 사고) 계획수립 및 결과 실적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4/5) - ①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사고 및 현장인근시설 피해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사고 발생 시, 해당사고의 피해규모·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건설사고 발생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10) - 건설사고발생에 따른 조치결과에 따른 검토 및 관리여부 확인 ※ 심사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의 최근 3년 이내의 사고발생여부를 범위로 함 ※ 무사고일 경우, 해당 증빙자료 확인 시 결측 ②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10) - 사고발생 시 조사 및 조치결과의 확인에 관한 기관 지침/규정 수립여부(원인조사, 조치결과 확인 등의 업무절차) 확인 ③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음(10) -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결과의 확인을 기관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유여부 ※ 무사고일 경우, 해당 증빙자료 확인 시 결측 (다음페이지 계속)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4/5) - ② [배점: 30점]

□ 세부 심사내용 (계속)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30점
제출사항	'20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인용 -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제출자료를 통해 심사 - 건설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실적, 기관의 지침 및 규정 - 구성원간의 교육, 회의, 게시판 공람 등의 내부공유 실적 * 무사고 증빙방법 : 사고관리 누적실적에 관한 공식자료, 혹은 '사업장별 장기요양 승인/반려 요청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요청)'가 확인될 시 결측(①, ③에 대해 결측적용)

㉔ 안전수준 건설현장_건설기술진흥분야 [㉔-2-2]

④ 건설안전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5/5) [배점: 1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현장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안전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사고 저감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한 기관의 우수사례 실적(15) - ‘건설사고 저감’을 목표로 기관에서 개발한 안전콘텐츠, 안전의식 개선 활동 등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사항을 제출 - 제출사항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심사 1)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목적성 2) 기획·구성내용 등의 창의성 3) 건설현장 확산 및 보급 등의 활용성 4) 건설안전 인식개선 및 사고저감 등의 환류성 ※ 건설현장 분야 내 타 심사지표의 실적과 중복적용 불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건설현장 심사대상 기관 / 15점
제출사항	•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건설현장 분야) 전 심사대상 신규적용 - 해당업무에 대한 내부보고(기획·활용실적) 등 공문서 ※ 기관의 대표실적 1개 제출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수립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기한 내 제출 여부(매년 2월 15일) ※ 시설물관리계획 최초 제출 승인 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함 ※ 소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의무 시설물 중 기한 내 제출된 계획 수립 시설물의 비율을 심사함 (시설물관리계획 기한 내 제출 시설물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의무 시설물) ②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 여부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중 실시 시기를 준수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심사함 ③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 수준 -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을 정성적으로 심사함(비계량심사) ※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2항 중 각 호의 사항 수립 및 그 수준을 심사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40점
심사방법	①, ②, ③ 별도제출 없음 • 심사대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의무 시설물만 심사대상으로 함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의무 비대상 시설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㉔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의 조직·인사와 전략방향 설정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 담당자만의 노력 이외에 기관의 관리 업무체계 개선 및 전략방향 설정 등 인사규정과 조직의 목표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적절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규정한 공식 문서(직제규정 등) 수준을 심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장 내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수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 담당자와 관련된 인사규정(인센티브 포함) 등의 존재 여부를 심사함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 사업 분야의 경영지표 - 경영평가 주요사업지표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지표 설정 여부와 수준을 심사함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① 조직 구성과 조직의 업무 분장을 증빙할 수 있는 조직도,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인사규정 등 ③ 별도 제출 없음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법적의무에 부합한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법정기한 내 실시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결과보고 여부를 심사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시설물 중 법정기한 내 실시 및 결과보고 시설물의 비율을 심사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① 별도제출 없음 • 심사대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 1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관련 운영체계 구축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의 확보,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구축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수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보유 여부와 그 수준을 심사함 ※ 업무매뉴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이 기술된 지침서 등을 의미하며, 시설물안전법 대상 외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도 포함하여 심사함 ② 시설물 설계도서 보유 여부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보유 여부를 심사함 ※ 설계도서 보유 의무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보유 시설물의 비율을 심사함(설계도서 보유 시설물 / 설계도서 보유 의무 시설물) ※ 설계도서 미보유 시설물의 경우, 설계도서 부분제출 실적을 반영하여 심사함 ③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 수준 - 소관 시설물의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여부와 수준 및 활용 실적을 심사함 ※ 심사대상기관 : SOC 중점기관 (다중이용시설 중점기관 결측 가능, 해당 배점은 타 항목으로 분배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100점(①~⑥)
심사방법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매뉴얼 ② 별도제출 없음 ③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파악 가능한 DB칼럼 및 테이블, 주요 기능에 대한 화면캡처본과 정보시스템 이용실적 등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2 [배점: 100점]**☐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관련 운영체계 구축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의 확보,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구축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④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및 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수준 -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체계 수준과 시설물 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수준을 심사함 ※ 시설물 사고 대비 모의훈련의 경우, 모의훈련 실시 여부와 더불어 기관 차원의 모의훈련 계획 수립과 그 이행 실적을 심사함 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을 심사함 ※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지관리기술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위탁 포함 (외부전문기관 의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만 인정함)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의해, 제안된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내·외부 검증을 거치는 체계, 규정 및 그 실적을 심사함(법적 의무에 따른 행위는 제외함) ⑥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 관리수준 - 시설물안전법 이외 타 법령 등에 의한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준현황을 심사함 ※ 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실적 제출이 필요 ※ 별도의 첨부 양식 제공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100점(①~⑥)
심사방법	④ 즉각 대응체계 및 모의훈련 계획·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⑤ 검증체계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나 문서 ⑥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 확보 수준과 무사고 실적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여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형식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 대비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 수준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등급)수준을 심사함 ※ 형식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은 시설물구분에 따른 동일 시설물 종류를 공용연수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산정함 ※ 소관 시설물 중 평균안전등급을 하회하는 시설물 비율이 낮게 관리되는지를 심사함 ※ 평균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 소관 시설물이 B등급인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함 ② 시설물 관련 무사고 실적 -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사고 실적을 심사함 ※ 시설물 사고란, 미흡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및 범위와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고 인정 여부 및 경중을 판단함 ※ 시설물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감점의 폭을 결정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60점
심사방법	①, ② 별도제출 없음 ※ 심사단이 시설물 사고로 판단한 건에 대하여 기관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사고에 대한 소명서 추후 별도 제출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㉔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보수·보강 실적과 노후화 대비 노력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설물 노후화 대비 노력 수준 -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노후화 또는 교체의 기준 수립, 노후화 또는 교체 대비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조치 실적을 심사함 ② 보수·보강 실적 이력관리 수준 - 소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을 심사함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이란,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 제안된 보수·보강, 교체, 개축 등으로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킨 행위를 의미함 ※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킨 행위도 포함함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FMS를 통해 제출된 보수·보강 실적만 인정함 ※ 시설물안전법 외 시설물은 보수·보강 실적 별도제출 ※ 점검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보수사항이 없는 경우나 이전 연도에 보수가 완료된 경우 점검보고서 및 과년도 보수실적 별도 제출 ③ 보수·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수준 - 보수·보강 예산 투입 시 시설물 성능 관점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을 심사함 ※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객관적인 투자우선순위 방법을 적용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순한 예산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① 노후화 기준 수립, 노후화 대비 계획 및 실적 증빙자료 ② 시설물안전법 대상 외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실적 증빙자료 ③ 투자우선순위 의사 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실적 증빙자료 ※ ①, ③에 대하여 결측이 있는 경우 결측 사유를 명시하고 결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결측 해당 배점은 타 항목으로 분배함) ※ ① 결측사유 (대상 시설물 경과기간 25년 미만인 경우 결측 가능) ③ 결측사유 (대상 시설물 5개 이내인 경우 결측 가능)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㉔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시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 조직 구성원의 교육·자격 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을 심사함 ※ 교육이수 및 전문자격 취득과 관련한 기관의 지침 등 계획 수립 및 그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 전문기술의 적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노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을 심사함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첨단 기술 등)의 개발·활용 및 혁신사례 등 기관의 모든 노력 수준을 심사함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①, ② 기관이 제출한 모든 노력 및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㉔ 안전수준 시설물 [㉔-3]

㉔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안전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실행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 노력 -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이상기후, 테러 등에 의한 시설물의 붕괴 또는 기능상실의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 계획 수립 수준을 심사함 ※ 시설물 기능상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시간 최소화 및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 방침, 시스템 등 계획 수립 여부와 타 공공기관, 국가부처, 지자체 등과의 공동 대응 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함 ※ 지진의 경우,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향상과 같은 대책 이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가정하여 복구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복구지연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 방지 계획 수립 실적을 인정함 ② 시설이용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 수준 - 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체의 노력 수준을 심사함 ※ 시설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을 의미함 ※ 일반 국민이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상 문제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사함 ※ 전기·가스·소방설비 등에 대한 점검지적사항 개선 등 안전관리 개선노력 포함 가능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시설물 심사대상 기관 / 50점
심사방법	① 복구 우선순위, 피해 대응 전략 등의 계획이 명시된 규정과 문서 ② 시설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관련 증빙자료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② 중 한 지표 이상 제출

㉔ 안전수준 연구시설 (㉔-4)

① 연구실 일반안전분야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연구실책임자(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수준과 일반 안전분야 관리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핵심가치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연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의 안전활동 참여 수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등 연구실책임자의 안전활동 수준 확인 ② 연구활동종사자 및 기관 관리자의 안전활동 참여 수준 - 일상점검,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매뉴얼 등의 실시 및 비치 ③ 연구실내 안전활동 - 정리정돈 및 취침, 취사, 흡연 행위 확인 ④ 기관 지원 사항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 상태,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일반분야 10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3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② 연구실 기계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위험기계·기구, 연구장비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내 위험기계·기구 취급시 협착, 전도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방호설비가 적절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게시 및 안전검사 주기 확인 - 안전방호장치, 안전덮개, 동력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 적정 방호장치 설치 유무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활용 여부 ② 연구 기계·기구 또는 연구장비 안전관리 - 장비 손상 및 파손 여부, 적정한 위치(전도 위험 등)에 설치 - 방사선, 레이저 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③ 기관 지원 사항 - 크레인, 로봇 등 대형 장비 활동범위에 적합한 공간 확보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기계분야 10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③ 연구실 전기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대용량기기, 전기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내 전기 화재, 누전,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안전하게 대용량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대용량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 및 충전부 안전관리 - 전로를 옥내배선과 직접접속 또는 적정용량 이상의 전용콘센트 사용 확인 - 감전방지 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 절연덮개 등의 설치 유무 ② 전기콘센트 및 전기배선 안전관리 - 전기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여부 - 접지형 콘센트 사용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 확인 - 개수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 방적형 콘센트 설치 등) 확인 ③ 분전반 안전관리 -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확인 - 분전반 도어개폐, 적재물 적치, 경고표지 등 적정 관리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전기분야 14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④ 연구실 화학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유해화학물질은 전용시약장 및 전용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폐시약, 폐액에 대한 위험요인 역시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 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시(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확인 - 화학물질 성상별 보관(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 확인																																																	
	<table><tr><td></td><td>제1류</td><td>제2류</td><td>제3류</td><td>제4류</td><td>제5류</td><td>제6류</td></tr><tr><td>제1류</td><td></td><td>X</td><td>X</td><td>X</td><td>X</td><td>O</td></tr><tr><td>제2류</td><td>X</td><td></td><td>X</td><td>O</td><td>O</td><td>O</td></tr><tr><td>제3류</td><td>X</td><td>X</td><td></td><td>O</td><td>X</td><td>X</td></tr><tr><td>제4류</td><td>X</td><td>O</td><td>O</td><td></td><td>X</td><td>X</td></tr><tr><td>제5류</td><td>X</td><td>O</td><td>X</td><td>O</td><td></td><td>X</td></tr><tr><td>제6류</td><td>O</td><td>X</td><td>X</td><td>X</td><td>X</td><td></td></tr></table>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X	X	X	X	O	제2류	X		X	O	O	O	제3류	X	X		O	X	X	제4류	X	O	O		X	X	제5류	X	O	X	O		X	제6류	O	X	X	X	X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X	X	X	X	O																																											
	제2류	X		X	O	O	O																																											
제3류	X	X		O	X	X																																												
제4류	X	O	O		X	X																																												
제5류	X	O	X	O		X																																												
제6류	O	X	X	X	X																																													
	- 시약의 적절한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의 관리 확인																																																	
	② 폐액·폐시약 안전관리 - 폐액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확인 - 보관장소 및 보관량 적정성 확인																																																	
	③ 전용 시약장 및 전용 캐비닛 - 시약장 전도방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 취급 화학물질 특징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필요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화학분야 12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⑤ 연구실 소방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 및 화재 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안전장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훈련 실시 및 매뉴얼 숙지 등의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비상시 대피활동 - 비상시 피난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동선 등) 확보 여부 - 비상대피 안내정보 제공 여부 -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② 화재 관련 안전활동 - 연구실 내부에 취급물질별 적정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 소화전 관리상태(호스 보관상태, 내·외부 장애물 적재, 위치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여부 등) - 스프링클러 외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분포구역 내 방해물 설치 여부 - 적합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소방분야 10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⑥ 연구실 가스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고압가스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 내 취급·보관하는 고압가스는 화재·폭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및 배관에 대해 가스감지 및 전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 가스용기 충전기한, 보호캡, 전도방지장치 확인 및 설치 유무 -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 화염 취급 분기관에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여부 -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② 가스누출 대비 안전관리 -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독성 등) -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가스분야 18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⑦ 연구실 산업위생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연구환경 및 종사자 보건·위생에 관한 관리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적절한 조도, 소음, 공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구급약품 비치 등 개개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연구 환경 안전관리 -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 수준 유지 여부 -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 흡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어풍속 유지 등) 여부 - 세척장비 관리 여부(안내표지 부착, 주기적 점검 등) -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 노출도평가 적정 실시 여부 ② 보건·위생 안전관리 -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 연구실 내 또는 비상시 접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상조치약, 붕대 등) 구비 여부 -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산업위생분야 11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⑧ 연구실 생물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생물체 및 동물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취급 및 저장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생물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한 사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생물분야 안전관리 - 세척·소독장치와 생물활성제거를 위한 장치설치 및 관리 확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 고위험 생물체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확인 - 생물안전작업대(BSC), 클린벤치 관리 여부 ②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 - 생물체(LMO, 고위험병원체 등) 취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등 안전운영 상태 ③ 동물/식물/곤충 사육시설 안전관리 - 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생물분야 13개 지표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중 연구시설 심사대상 기관 / 60점 ※ 30개 표본연구실 심사 후 평균반영
심사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안전성과 및 가치

© 안전성과 및 가치

①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및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가치 검토 및 환류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목표 달성 및 안전경영책임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성과측정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 안전책임계획 각 지표에서 제시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계획된 성과측정의 원칙, 계획의 이행정도와 목표의 달성 정도의 확인, 문제점 도출 ②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 도출된 문제점, 전년도 수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조치 및 차기 계획수립에 반영,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영자검토, 안전보건활동계획 등 환류 수준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성과 및 가치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활동 및 성과에 대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근로자(협력업체, 발주 건설현장 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임원 또는 조직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수준과 인사 또는 성과급 지급 반영 등에 대한 활용 수준 ③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주무부처 등에서 실시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를 개선·실행하기 위한 조치계획의 내실성·충실성 ④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외부평가기관(정부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실시한 안전평가*에 대한 기관의 성과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재난관리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등 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대국민,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한 안전활동 노력과 성과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100점
심사방법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심사

© 안전성과 및 가치

②-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이력관리('22년 적용 예정)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수준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장·단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의 적정성 - 각 심사항목별 심사결과 및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근본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의 적정성 ② 개선사항별 이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개선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및 문제점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의 적정성(실행 시기, 실행 담당부서, 예산확보 등) ③ 개선완료 및 현장 적용성 확인 - 개선사항별 이행계획의 완료 여부 및 현장 적용성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의 적정성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30점
심사방법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심사

© 안전성과 및 가치

③ 안전문화 확산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심사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 기관의 안전문화 추진 계획 및 확산 노력도 ②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 근로자·이해관계자·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 활동사례
적용대상 (배점)	•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20점
심사방법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성과 및 가치

④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 성과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 및 감소성과를 심사한다.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심사내용	① 직영사업소·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여부 - 사망사고는 심사대상년도 및 안전관리등급 발표 전까지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 ② 기관의 직영사업소·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의 사망재해 감소 성과 ※ 사고사망자 증감인원수와 증감률을 조합하여 산출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⑩안전보건성과-3.사망사고 감소성과」 결과 반영
적용대상 (배점)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전 기관 / 100점
심사방법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